

춘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0나52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중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마준석, 박영재, 정지욱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7. 10. 선고 2019가단51958 판결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1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6. 접수 제2846호로 마친, 별지 목록 1 기재 2, 4, 5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6. 접수 제2848호로 마친, 별지 목록 1 기재 3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6. 접수 제2847호로 마친,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1, 2, 3 부동산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 16. 접수 제285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총 종중원은 94명 내지 95명인데 원고가 일부 종중원을 누락한 채 2019. 1. 1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소집통지를 한 하자가 있고, 위 총회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① 족보미등재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는 H계 5명과 J계 1명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씨 E의 7세손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후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J계의 CX, CY, CZ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H계 DA은 족보 기재상 2001. 3월생이므로 이 사건 총회 당시 미성년인바 종중원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③ 이 사건 총회 결의 당시 원고의 총 종중원에 해외거주자로 배제되었던 H계의 DB, DC, DD, DE 4명을 포함하여 총 종중원을 85명으로 보더라도 그 중 3분의 2 이상인 57명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종중원 중 위 해외거주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이 종중원 전부의 존재 내지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갑 제44 내지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종중원에게 알고 있는 종중원을 파악하여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총회 소집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중 연락 가능한 종중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R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원의 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총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2, 갑 제44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연고항존자인 BL은 2018. 11. 27. 원고의 회장 R에게 총회와 관련된 모든 준비 및 제반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연고항존자 BL의 위임을 받아 R가 행한 이 사건 총회 소집통지는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정, 판사 조미연, 판사 김시원

